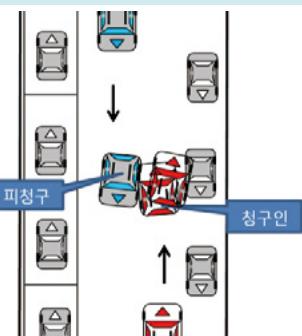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이면도로 교행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이면도로	 직진	 맞은편 직진	참고기준 249-1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749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교행이 어려운 이면도로에서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 교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9-1		<p>좁은 도로 폭이나 도로 양쪽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 차량의 교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차량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양 보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방향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이면도로에서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 교행하다가 접촉(1차)한 이후 청구차량이 우측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접촉(2차)한 사고임 사고 장소는 협소한 도로이므로, 상호 양보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함에도 양 차량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면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진행 중 교행하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이면도로에서 좌우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청구차량이 마주오던 청구차량을 확인하고 피양하던 중 청구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양 차량이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교행 중 서로 충돌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피청구차량과 충격하여 운전석 앞 부분이 손상됨)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피해차량과 충격하여 조수석 앞 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좁은 도로 폭의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이 서로 교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가상의 중앙선 침범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주차차량들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됨
- 청구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교행을 하면서도, 사고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을 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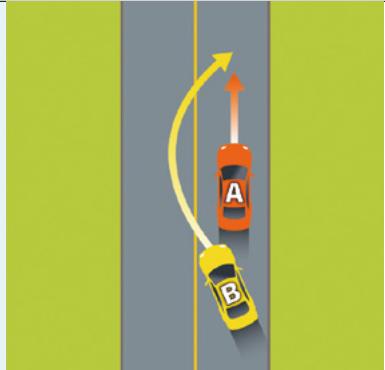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의 운전자 모두에게 양보운전 의무가 있는 점, 양 차량 모두 서행하지 않고 교행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교행을 하면서도 사고회피를 위해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9-1은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교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양 차량의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 :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9-1을 기초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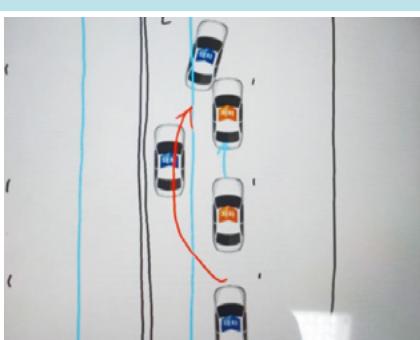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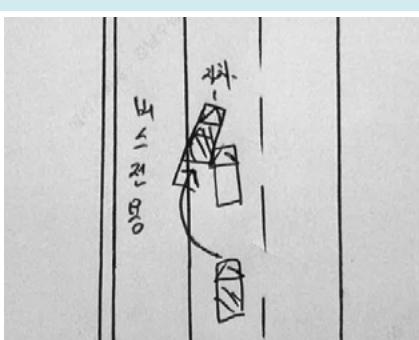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추월 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선행 직진	후행 추월	참고기준 250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951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청구차량을 추월 후 다시 직진 차로로 급하게 복귀하면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0		<p>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추월행위는 피추월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추월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뒤에서 앞으로 추월하는 도중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사고 장소의 왼쪽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피청구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추월하여 진행할 것을 청구차량으로서는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선행 청구차량을 추월하며 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사고 장소는 추월이 불가능한 장소가 아니며, 추월 완료 후 진로변경 중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 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추월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추월 후 청구차량 바로 앞으로 급진로변경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앞지르기가 금지된 도로에서 선행하던 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 후 선행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려는 후행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한 이후 직진차로로 급히 복귀하면서 직진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선행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추월한 장소는 버스전용차로로 추월이 금지된 장소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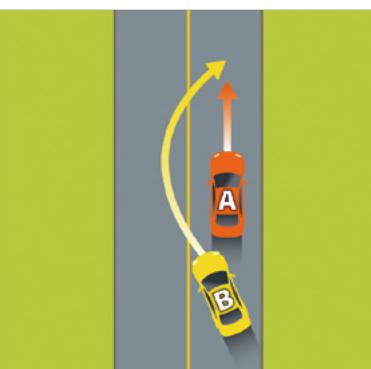
결정 이유

-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좌측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청구차량을 추월한 이후 직진차로로 급히 복귀하면서 선행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선행하던 청구차량에게 피청구차량의 추월 후 급진로변경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0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의 추월행위는 피추월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추월차량의 일방과 실로 보아, 선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후행 추월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추월 후 청구차량 바로 앞으로 급진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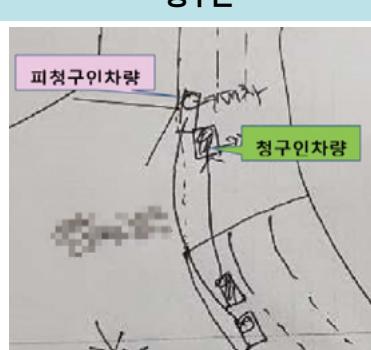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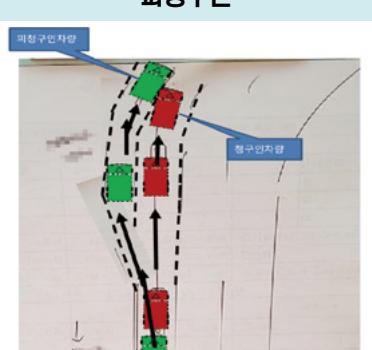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추월 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선행 직진	후행 추월	참고기준 250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06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선행하던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0		<p>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추월행위는 피추월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추월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정상 진행 중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을 예상하고 피양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왼쪽으로 진로변경한 것은 맞지만, 교차로 이후 왼쪽에 차로가 하나 더 생기는 도로 구조이기 때문에 피청구차량은 새로 생긴 차로에 진입하고, 오히려 청구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따라서 차로를 변경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교차로의 유도선 따라 진행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동영상(선행 청구차량을 추월하고 있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앞지르기가 금지된 도로에서 선행하던 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 후 선행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려는 후행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에 대한 청구차량의 인지 가능성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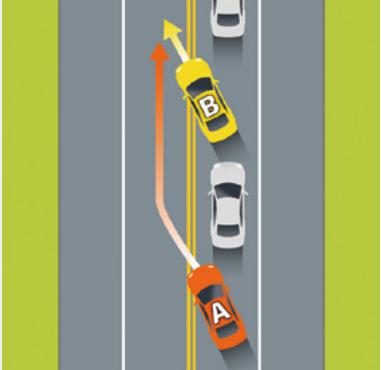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추월하다가 선행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도로구조와 충격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은 사고 전 선행하여 왼쪽으로 추월 중인 피청구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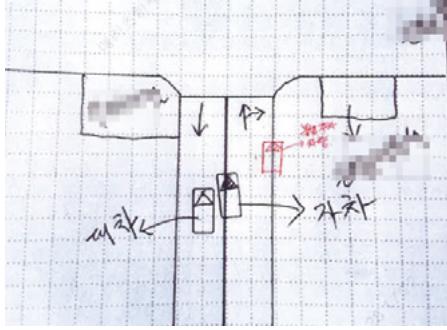
결정 이유

-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진행하여 선행하던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추월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도로구조와 충격부위를 보면, 청구차량으로서도 다소 선행하여 왼쪽으로 추월 중인 피청구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0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의 추월행위는 피추월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추월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선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후행 추월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선행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사고 직전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도표 250을 기초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양 차량 추월 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 (기본과실)					참고기준 250-1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171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 진행 중 선행하던 청구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0-1	 <p>기본비율 A : B = 60 : 40</p>	<p>기본적으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지만, 후방차량이 전방차량에 비하여 주변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가 용이하므로 후방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 전방차량인 B차량은 후사경을 통해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는 A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및 중앙 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운행이므로 갓길 주행이나 버스전용차로 주행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피청구인</p> 

- 선행 청구차량이 앞에 정차 중이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 중 중앙선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후행 피청구차량과 충돌 한 사고로,
- 청구차량으로서는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점유하며 진행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무리 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추월 중 청구차량이 급출발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후행차량, 청구차량은 선행차량이고,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임)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은 운전석 측면이, 피청구차량은 조수석 앞부분이 손상됨)

- 동영상(후행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모습)
- 동영상(선행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

주요 생점

-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선·후행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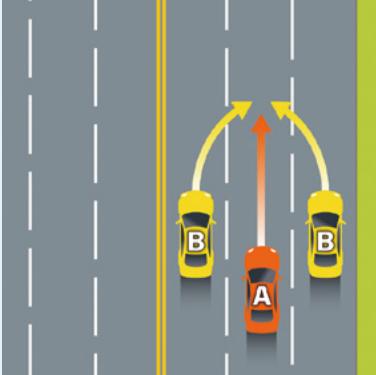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으로 추월 중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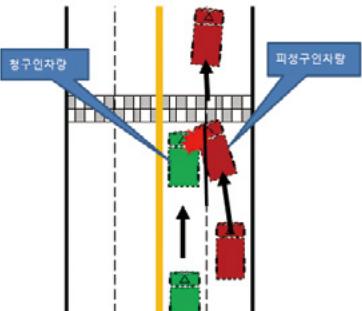
결정 이유

-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하던 중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중앙선 침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선행차량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0-1은 기본적으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지만, 후방차량이 전방차량에 비해 주변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가 용이하므로 후방차량의 과실을 크게 볼 수 있는 점, 전방차량은 후사경을 통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으로 추월 중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0-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52

사례 개요	심의번호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	 <p>기본비율 A : B = 30 : 70</p> <p>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약도 미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 앞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여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횡단보도 앞 실선구간(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진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무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2차로에서 선행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상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동일방향에서 피청구차량이 선행하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선행하다가 진로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는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 선행 차로(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차량도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중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5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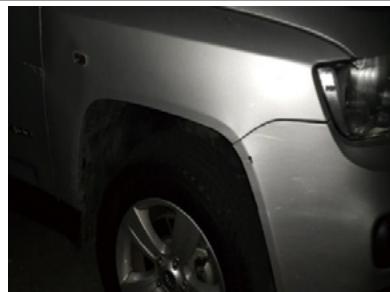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491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선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	<p>기본비율 A : B = 30 : 70</p> <p>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 직진 중 3→1차로까지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변경하는 피청구 차량을 확인하고 급제동 및 피양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중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과실도표 252를 적용하고, 피청구차량이 2개 차로를 변경한 점 감안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작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다차로 변경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변경을 하여 1차로에서 직진 중인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연속하여 진로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변경을 하면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다차로 변경한 사실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는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 선행 차로(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차량도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변경을 하다가 1차로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를 기초로 하고,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진로를 변경한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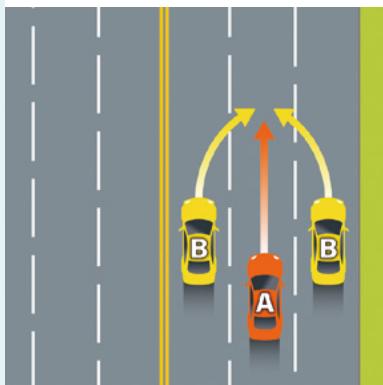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수정과실)				도로	↑ 후행 직진	↑ 선행 진로 변경	참고기준
						252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738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방향에서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하는 순간 선행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정지하던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



기본비율 A : B = 30 : 70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3차로를 진행 중 피청구차량이 4차로의 실선 구간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앞범퍼와 피청구차량의 뒷범퍼가 충돌한 사고로,</p> <p>• 도표 252에 의해 피청구차량은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 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완료하여 3차로에 진입 후 4차로로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보고 정차 중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완료한 이후 청구차량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청구차량의 후미추돌 사고 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하는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기재됨
 -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모습)

주요 장점

- 동일방향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3차로 진입 정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3차로에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황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한 이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심의외 차량으로 인해 급정지하여,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으나,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하였던 점, 4차로에서 진행하던 심의외 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피청구차량이 정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는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 선행 차로(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차량도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하는 순간 선행차량의 진로변경으로 급정지하여,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를 기초로 하고,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실선 추월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도로	실선 추월	선행 직진

252-1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188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진행 중 1차로에서 추월하던 피청구차량이 2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1	<p>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 및 동법 제21조에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모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구간에서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하다가 B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터널 내 2차로에서 선행하여 정상 주행 중 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추월 후 급진로변경 중 청구차량 충격한 사고로,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후속 피청구차량이 급추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터널 내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직진중인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터널 내에서 진로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선행하여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추월 후 2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후행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추월 후 진로변경하여 선행차량을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후행 피청구차량이 왼쪽의 1차로를 이용하여 추월 후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2차로의 선행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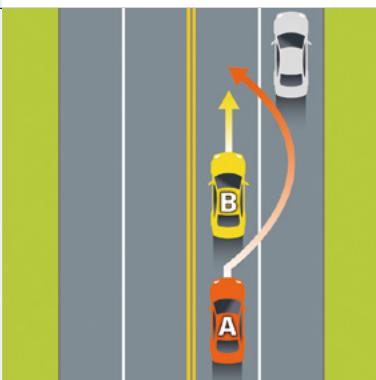
결정 이유

-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청구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후행 추월하던 피청구차량이 2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추월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추월 후 급진로변경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1은 실선에서 추월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과 동법 제21조에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모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구간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하다가 선행직진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실선에서 추월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후행 피청구차량이 선행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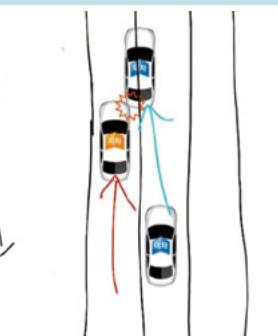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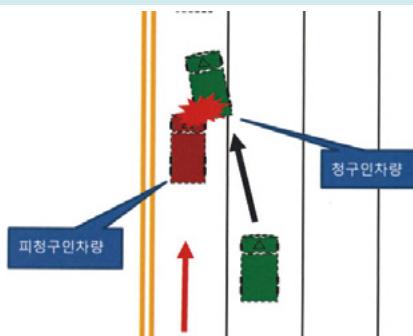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실선 추월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실선 추월	선행 직진	참고기준 252-1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749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선구간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진행 중 1차로에서 후행하다가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던 피청구차량이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1	 <p>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 및 동법 제21조에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모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구간에서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하다가 B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의 실선구간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후 고의 급정지하여 청구차량 충격한 사고로, 실선구간에서 차로 변경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태였고,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추돌당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추월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후행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추월 후 진로변경하여 선행차량을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진로변경 시간과 정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1차로를 상당시간 동안 서서히 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1차로 후방에서 청구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실선구간에서 2차로로 진입 후 다시 1차로의 청구차량 앞으로 급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추월 후 청구차량 앞으로 급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상당시간 동안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던 점, 양 차량의 접촉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1은 실선에서 추월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과 동법 제21조에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모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구간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하다가 선행직진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실선에서 추월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후행하다가 실선구간에서 선행 청구차량을 추월하여 청구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1을 기초로 하고, 피청구차량의 진입시간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에 대한 청구차량의 인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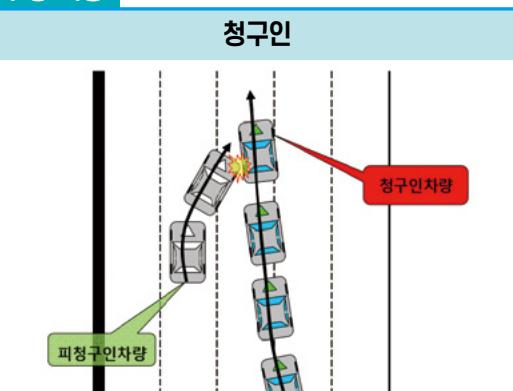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진로변경	진로변경	참고기준 252-2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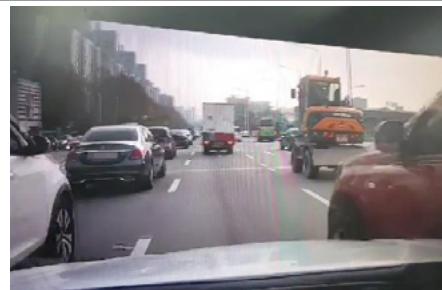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835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과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의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2	 <p>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선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동영상에 청구차량의 선진로변경이 확인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과 청구차량의 진로변경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선진로변경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피청구차량이 2 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 동영상(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피청구차량이 2 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양 차량의 동시 진로변경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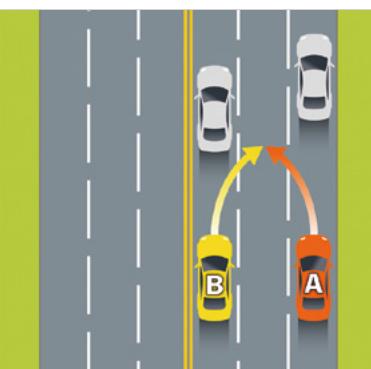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4차로에서 3차로로, 피청구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 한 사고로,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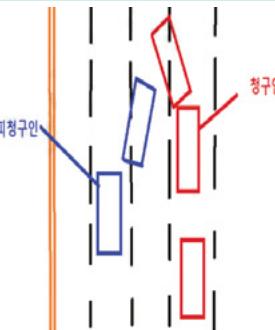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양 차량 책임 비율을 동등하게 평가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252-2는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왼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50% : 오른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양 차량의 동시 진로변 경 사고이므로, 도표 252-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52-2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888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과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2		<p>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선진로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후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선행진로변경을 완료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시도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양 차량의 동시 진로변경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정체차로 급진로변경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4차로에서 3차로로, 피청구차량은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급진로변경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보다 후행하고 있어서, 피청구차량의 급진로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2는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왼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 오른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의 동시진로변경 사고이므로 도표 252-2를 기초로 하고, 피청구차량이 정체 차로에서 급진로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정체 중 급차로 변경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 (측면충돌)	 직진(측면충돌)	참고기준 252-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612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방향에서 청구차량이 3차로를 직진 중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3	 <p>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 2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피청구차량의 급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켜고 30미터 이상 주행 후 3차로로 차로변경 중 3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갑자기 가속을 하여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시도하는 모습)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중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정체차로에 있던 차량이 급진로변경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진로변경 중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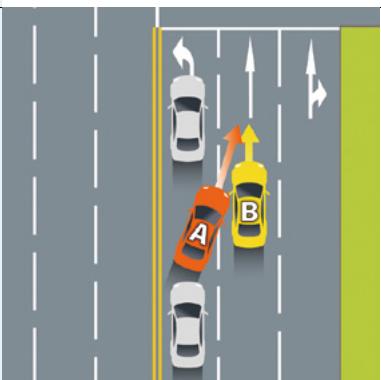
결정 이유

-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3차로를 직진 중 정체차로인 2차로에 있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3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정체차로에 있던 피청구차량의 급진로변경에 의한 사고인 점, 청구차량의 과속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3은 정체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직진차량으로서는 진로변경 차량이 정체구간 등에서 대기 중 갑자기 진로변경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진로변경차량의 앞부분으로 직진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여, 직진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정체차로에 있던 피청구차량이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급진로변경을 하여 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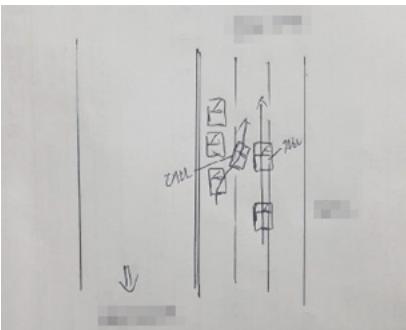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정체 중 급차로 변경 사고 (수정과실)		 도로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 (측면충돌)	 직진(측면충돌)	참고기준
					252-3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046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3차로를 일부 점유한 상태에서 2차로를 직진 중 정체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3	 <p>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근접거리에서 급진로변경하는 피청구 차량을 피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의 동시 진로변경 사고이지만,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1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모습)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측면, 피청구차량 조수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시도하는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정체차로에 있던 차량이 급진로변경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3차로 일부 점유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진로변경 중 3차로를 일부 점유하면서 2차로를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3차로를 일부 점유하면서 2차로를 직진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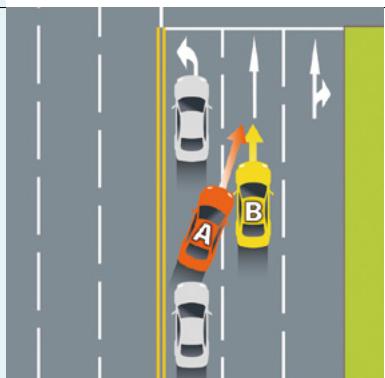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진로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3차로를 일부 점유하면서 2차로를 직진하였던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3은 정체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직진차량으로서는 진로변경 차량이 정체구간 등에서 대기 중 갑자기 진로변경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진로변경차량의 앞부분으로 직진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여, 직진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하다가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3을 기초로 하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차로를 일부 점유하면서 진행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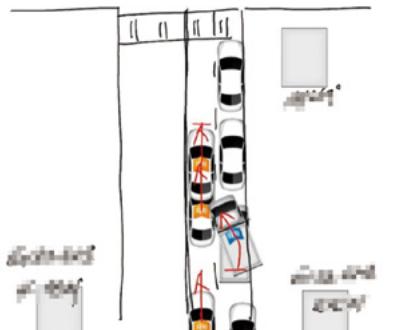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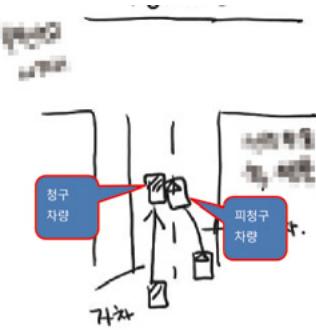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정체 중 급차로 변경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52-3
신호등 없음 도로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 (측면충돌) 직진(측면충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68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3	 <p>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 중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서행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빠르게 직진하는 청구차량의 우측 도어 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사고이나, 청구차량도 빠르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 중인 모습)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정체차로에 있던 차량이 급진로변경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과속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 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과속을 확인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청구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정체차로에 있던 피청구차량이 지나치게 근접한 거리에서 진로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차량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3은 정체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직진차량으로서는 진로변경 차량이 정체구간 등에서 대기 중 갑자기 진로변경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진로변경차량의 앞부분으로 직진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여, 직진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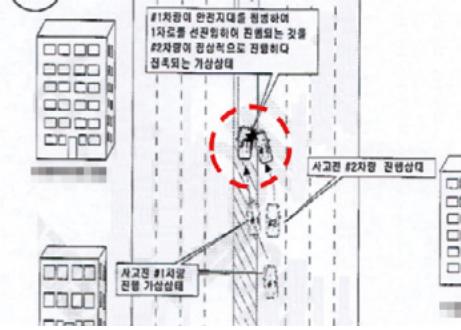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A안전지대 벗어나기 전)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후행 직진	선행 진로변경	참고기준 252-4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017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0 : 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차로로 진입하려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52-4(가)	 <p>(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자동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지대 진입 후행 직진차량인 A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100%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과실과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한 과실이 경합되었으므로,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 중 발생한 사고임 경찰서 조사 결과 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장신고 접수번호 2019-000000000000000000
성명	□가족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 □가족	
운전면허	증명서 제2종 보통	번호 : 11-14-
사고처방	처방 : <u>한국화재</u>	번호 : <u>000000000000000000</u> (수령자 : <u>한국화재</u>)
발행일시 2018.01.29 17:20		
발행장소 <u>한국화재</u>		
사고위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외 <input type="checkbox"/> 차량안전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u>손상 또는 경지 차지 위반</u>	
피해내용	인화 사용부서 부상 1 명 일상상	
사고개요	<p>+ 주의사항(500자)</p> <p>※ 주의사항은 본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주의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본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p>	
사고내용		

- 동영상(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기재됨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후행 직진차량이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직진 중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이용하여 추월 중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왼쪽 차로에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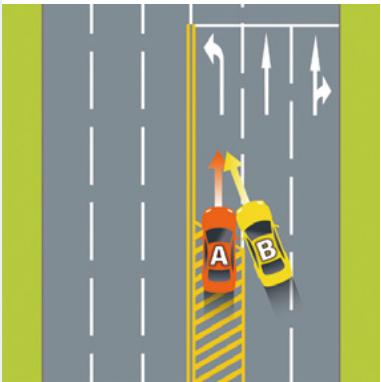
결정 이유

-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차로로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직진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정상적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4의 (가)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후행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금지된 주행을 한 차량이고,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선행차량은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므로, 후행차량이 안전지대 통과하여 진행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안전지대 통과하는 후행차량이 안전지대 벗어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안전지대를 통과 중인 후행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추월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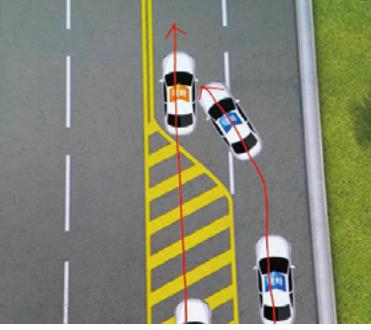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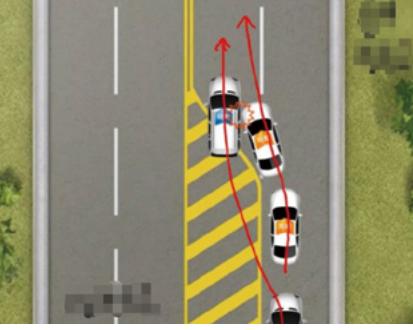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A안전지대 벗어나기 전)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후행 직진	선행 진로변경	참고기준 252-4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658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차로를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직후 사고가 발생함 		
참고 인정기준 252-4(가)	 <p>(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자동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지대 진입 후행 직진차량인 A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100%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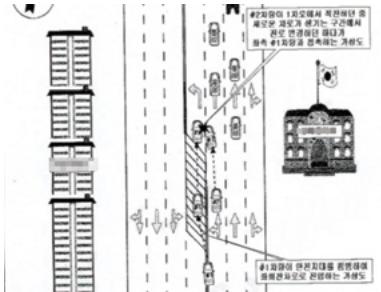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로를 직진 중이었고, 피청구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본 사고는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난 후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진로변경 중인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안전지대 침범은 지시위반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통사고 접수번호	JT000000000000000000 제2019-000000000000000000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인공면허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현대면허)		
관련면허	종별 제1종 보통 면허: 12345678901234567890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12345678901234567890	(소유자: 韩国公司)
발행일자 2019.04.10 08:00			
발행장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23 (경기도 면허)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재 <input type="checkbox"/> 화재당국 <input type="checkbox"/> 처치대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현장 신고 또는 지자 위임			
회수내용 인트로 사용 0 주행 0 출입 0 0:00,000 원 상당			
사고개요	#1차량은 안전지침에 따라 차선을 정확히 유지하면서 차선을 교차하는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충돌한 차량은 차량으로부터 충돌한 차량을 사고로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청구차량이 안전지대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됨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후행 직진차량이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직진 중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직후 사고가 발생함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난 직후 오른쪽 차로에 있던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난 직후 사고가 발생하여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날씨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로를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양 차량의 충돌지점은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직후로 보이는 점, 피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청구차량의 동태를 살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4의 (가)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후행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금지된 주행을 한 차량이고,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선행차량은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므로, 후행차량이 안전지대 통과하여 진행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안전지대 통과하는 후행차량이 안전지대 벗어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안전지대를 통과 중인 후행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다가 오른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4를 적용하여 과실을 판단하였고,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직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피청구 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A안전지대 벗어난 후)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후행 직진	선행 진로변경	참고기준 252-4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970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1차로를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4(나)	 <p>(나) A차량이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와 달리 B차량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달라 기본과실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반면, A차량이 직진 중임에도 A차량의 불법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므로 A차량의 불법행위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인		약도 미제출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완전히 통과한 이후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신호하면서 곧바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하면서 진로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중앙선 넘어 선행차량인 피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서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중앙선 및 안전지대 침범하여 선행차량인 피청구차량을 추월하였으므로,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추월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선행하는 모습, 포켓차로 생성지점)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포켓차로 생성지점을 지나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인 모습)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후행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한 이후 안전지대를 벗어난 상태에서 진로변경하던 선행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난 상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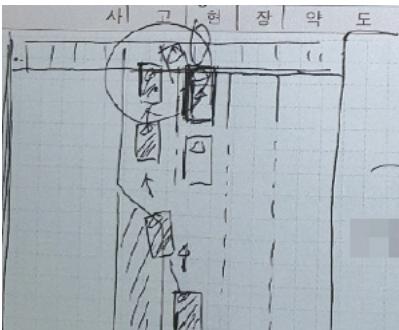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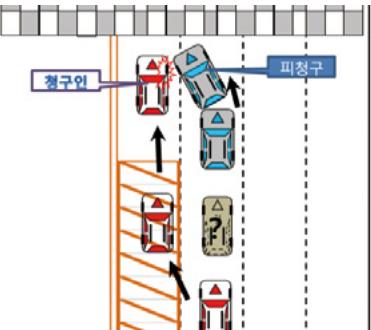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포켓차로(1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사고 장소는 안전지대를 지나 포켓차로에서 발생하였던 점, 청구차량은 사고 전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포켓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포켓차로가 생성된 이후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4의 (나)는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표 252-4의(가)와 달리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달라 기본과실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안전지대 통과 후 직진 중인 차량으로서도 안전지대를 통과한 불법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 안전지대를 통과한 불법행위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직진 중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선행 피청구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4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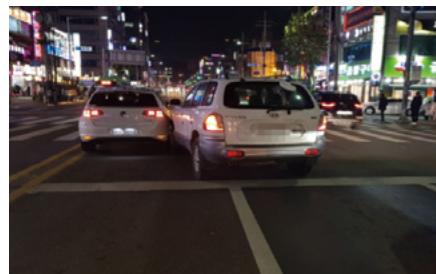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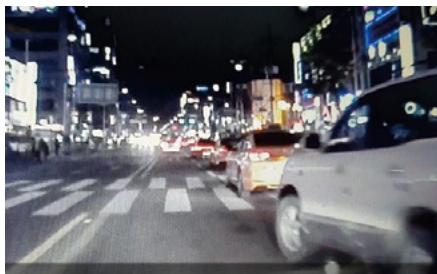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A안전지대 벗어난 후)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후행 직진	선행 진로변경	참고기준 252-4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875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1차로(포켓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4(나)	 <p>(나) A차량이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와 달리 B차량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달라 기본과실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반면, A차량이 직진 중임에도 A차량의 불법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므로 A차량의 불법행위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정체 중인 2차로에서 실선구간을 넘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선행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 중 청구차량이 안전지대 통과한 이후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추월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로변경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후행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한 이후 안전지대를 벗어난 상태에서 진로변경하던 선행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횡단보도 부근 진로변경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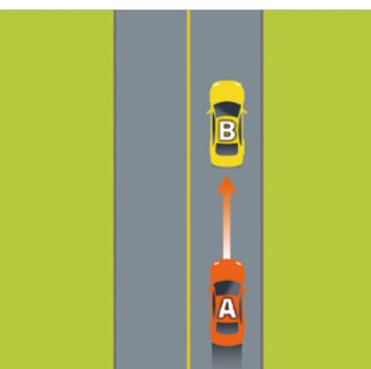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안전지대 벗어난 상태에서 1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정체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로변경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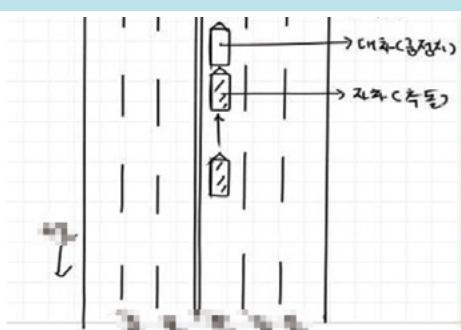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포켓차로(1차로)를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이후 포켓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4의 (나)는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표 252-4의 (가)와 달리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달라 기본과실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안전지대 통과 후 직진 중인 차량으로서도 안전지대를 통과한 불법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 안전지대를 통과한 불법행위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직진 중인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7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이후 직진을 하다가 진로변경을 하던 선행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 이므로, 도표 252-4를 적용하여 과실을 판단하였고,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던 상황 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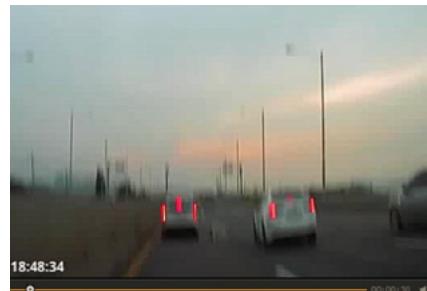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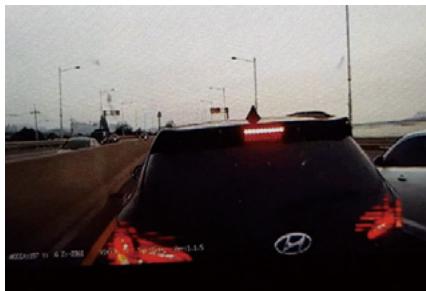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추돌 사고 (양 차량 주행 중) (기본과실)					참고기준 25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648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0 : 0
사고내용	•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를 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3	 <p>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급정지하여 청구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청구차량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1차로를 진행 중 도로의 돌발상황으로 선행차량들이 급정지하자, 피청구차량도 급정거하였으나, 청구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p> <p>•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추돌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후행 중 선행 피청구차량이 정지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하는 모습)
- 동영상(도로 전방에 출현한 강아지로 인하여 급정지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차로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피청구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확인됨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도로 전방에 출현한 강아지 때문에 급정지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는 인정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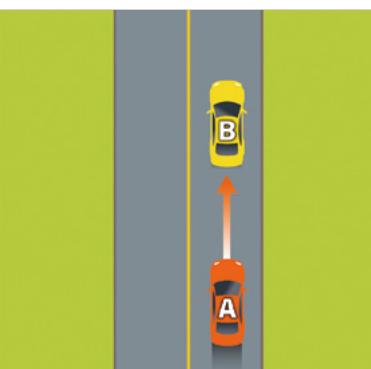
결정 이유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직진 중 도로에 출현한 강아지로 인하여 급정지하자,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후미추돌 사고인 점, 피청구차량은 도로에 출현한 강아지로 인하여 급정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3은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점과 뒷차량은 앞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9조를 근거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후행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5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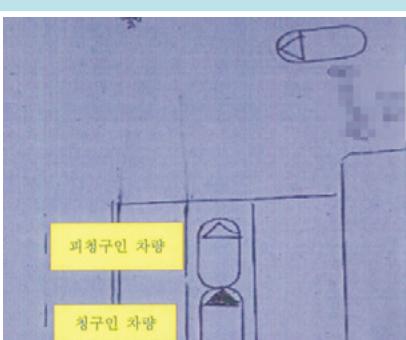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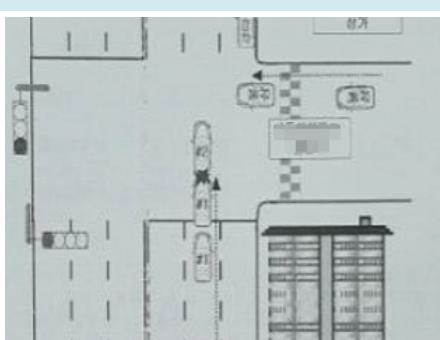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추돌 사고 (양 차량 주행 중) (수정과실)					참고기준 25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9292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심의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 하자 2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3	 <p>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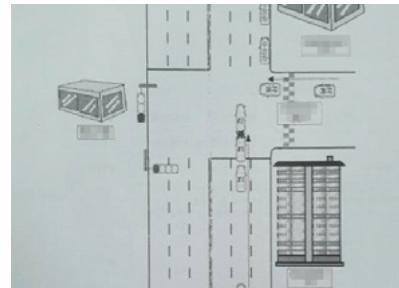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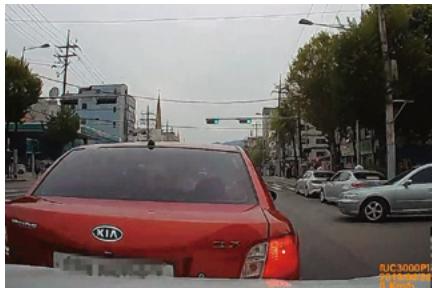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선행하다가 이유 없이 도로에 정지하던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를 진행 중 오른쪽 도로에서 심의외 차량이 급히 나오는 것을 보고 정지하던 중 뒤따르던 청구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로 볼 수 있으며,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였던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2019-00000000호
성명	홍길동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의면허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운전면허증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접수번호: 123456789)	
운전면허	종별: 제2종 보통	번호:	
사고처	지점: 승용차	번호:	(소유자: 김철수)
발행일자: 2019.04.29 11:00			
발행장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23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사고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량사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현장: 안전거리보호 불이행(월보도로)			
피해내용: 행인: 사망 1명, 부상 1명, 출퇴근			
관심항목: ① 과속으로 사고를起こ한 운전자 ②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조작한 적이 있는 운전자 ③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조작하거나 차량을 도난으로 판매하는 범죄자를 찾는다.			
사고개요	본 사건은 2019년 4월 29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23번지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는 사망하고 차량은 충돌로 인해 전복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조작하거나 차량을 도난으로 판매하는 범죄자를 찾는다.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심의와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모습)
 - 동영상(정지한 피청구차량을 청구차량이 추돌하는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후미추돌 사고가 확인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피청구차량이 급정지하였던 상황이 확인됨

주요 장점

- 동일차로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급정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확인됨
 - 심의외 차량이 3차로 중간에서 정지하였음에도 피청구차량이 급하게 정지하였음

결정 이유

- 후행 청구차량이 급정지하는 선행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심의외 차량 때문에 정지하였던 점, 다만, 피청구차량이 다소 급하게 정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3은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점과 뒷차량은 앞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9조를 근거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후행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선행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53을 적용하여 과실을 판단하였고, 피청구차량이 다소 급하게 정지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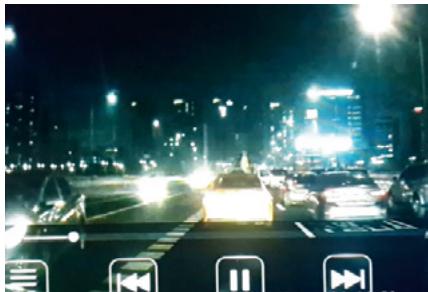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유턴 사고(직진 대 유턴) (B상시유턴구역) (기본과실)					참고기준 254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708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p>• 정체구간에서 1차로를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맞은편 도로의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54(가)	<p>(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유턴차량은 불법유턴을 한 것은 아니라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였으므로 유턴차량의 일방과실로는 볼 수 없고, 직진차량으로서도 전방에서 유턴 중인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급유턴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정차 후 직진함이 명확한데도 피청구차량은 급유턴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불가항력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정상유턴 신호에 유턴 중 청구차량이 정차 해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유턴을 시도한 점과 청구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의 정체구간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면서 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유턴 중 반대방향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인 모습)

주요 쟁점

-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의 정체구간에서 직진 중 반대방향의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정체구간의 1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맞은편의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경위와 양 차량의 충돌부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의 (가)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신뢰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지만, 유턴차량이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였으므로, 불법유턴으로 볼 수 있는 점, 직진차량에게도 전방에서 유턴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의 안전운전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직진신호의 정체 구간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상시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의 사고이므로, 도표 254의(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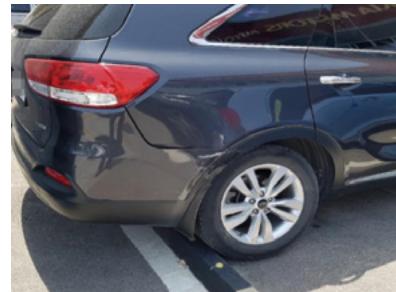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유턴 사고(직진 대 유턴) (B상시유턴구역) (수정과실)					참고기준 254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368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p>• 교차로의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맞은편 도로의 상시유턴구간에서 서행으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54(가)	<p>(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유턴차량은 불법유턴을 한 것은 아니라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였으므로 유턴차량의 일방과실로는 볼 수 없고, 직진차량으로서도 전방에서 유턴 중인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하다가 충돌한 사고로,</p> <p>• 경찰서 조사결과 피청구차량이 가해자로 확정되었고, 직진차량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유턴구간에서 유턴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이 앞범퍼로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전방주시 소홀도 사고의 중요 원인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됨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첨구차량의 서행 유턴 및 청구차량의 전방주시 소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의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의 상시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상당거리 이전부터 서행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함

결정 이유

- 교차로의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맞은편 도로의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유턴 신호를 하면서 상당거리 이전부터 서행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던 점, 청구차량의 전방주시 소홀의 과실도 상당한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의 (가)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신뢰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지만, 유턴차량이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였으므로, 불법유턴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직진차량에게도 전방에서 유턴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의 안전운전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의 (가)를 기초로 과실판단을 하였고, 청구차량이 상당 거리 이전부터 유턴을 하고 있던 피청구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 없이 직진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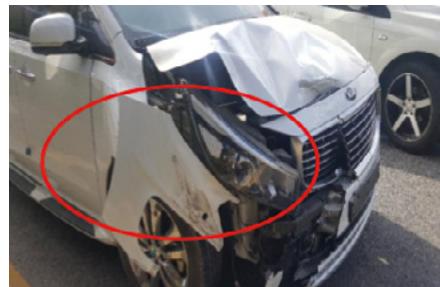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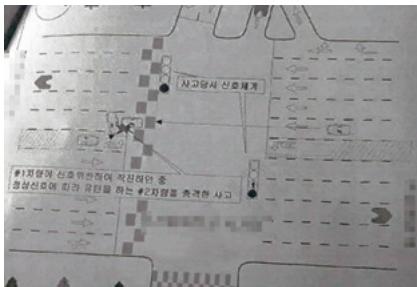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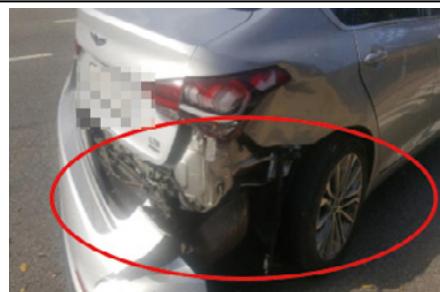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유턴 사고(직진 대 유턴) (B신호유턴) (기본과실)					참고기준 254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2970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청구차량과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나)	<p>(나)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유턴을 거의 완료하였던 상황에서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이 정상 직진하여 교차로 통과하여 도로를 진입하던 중 청구차량이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p>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확인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청구차량이 유턴
신호에 유턴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과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청 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인 점, 피청구차량의 신호변경 과정으로 불만한 입증자료는 없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의 (나)는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유턴 사고(직진 대 유턴) (B신호유턴) (수정과실)				참고기준 254 (나)
신호등 있음	교차로	직진	유턴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37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고, 이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나)	<p>(나)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급유턴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정상 직진과 피청구차량의 급유턴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p>		<p>약도 미제출</p> <p>• 피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이후 교차로를 벗어나기 전 적색으로 변경)중이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동영상(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직진 방향)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사진)

주요 쟁점

-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과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황색신호에 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이후 적색신호로 바뀐 점, 피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의 (나)는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이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고, 유턴 신호에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의 (나)를 기초로 과실비율을 판단하였고,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유턴 사고(우회전 대 유턴)
(B상시유턴구역) (기본과실)



신호등 있음



교차로



우회전



유턴

참고기준

**254-1
(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17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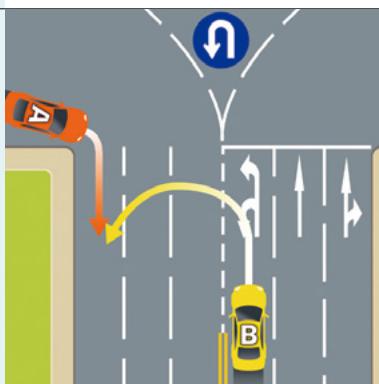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삼거리 교차로의 상시유턴구역에서 청구차량이 유턴 중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1(가)



기본비율 A : B = 30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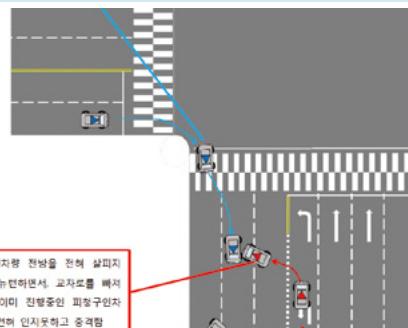
(가) B차량은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인 A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B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A차량은 우회전 차량으로서 반대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 이를 미리 발견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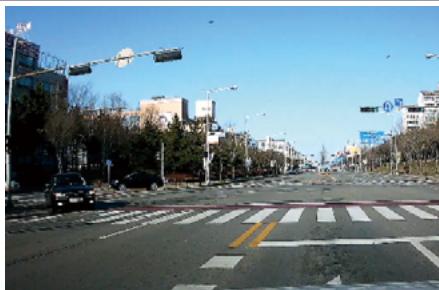
피청구인



- 청구차량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유턴 하던 중 대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고, 피청구차량은 대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15%, 피청구차량의 과실 85%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여 3차로에 정상 진입 후 3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며 2차로로 진입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급유턴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우회전을 완료한 상태이고, 청구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유턴 중 우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양 차량의 충격 직전의 모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유턴을 시도하고 있는 청 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양 차량의 충격 직전의 모습) |
|--|---|

주요 쟁점

-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우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유턴하던 중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면서 회전반경을 크게 한 점,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불상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대우회전을 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며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1의 (가)는 유턴차량이 신호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우회전 중인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유턴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지만, 우회전차량으로서도 반대방향의 도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사고 회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다가 우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도표 254-1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유턴 사고(우회전 대 유턴)
(B상시유턴구역) (수정과실)



신호등 있음



교차로



우회전



유턴

참고기준
254-1
(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070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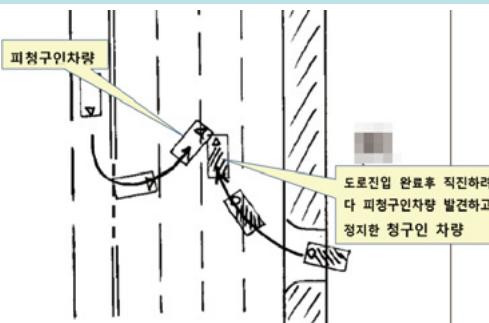
- 청구차량이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중 맞은편 도로의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1(가)**기본비율 A : B = 30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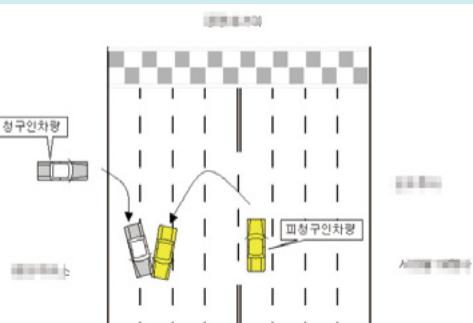
(가) B차량은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인 A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B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A차량은 우회전 차량으로서 반대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 이를 미리 발견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 청구차량이 주유소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을 완료한 이후 직진하려던 중 유턴하는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우회전을 완료하여 직진하는 상태였고, 유턴하는 피청구차량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주행차로 직진신호 시 유턴을 시도하던 중 주유소에서 주도로에 진입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유턴지점에서 유턴(통상 유턴표지판에 지시내용이 없을 경우, 주행신호시 유턴)을 하던 중이며, 청구인차량은 주유소 출입구에서 우회전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이 차선변경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도로가 아닌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그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 있는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도로가 아닌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도로가 아닌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주유소에서 3차로로 우회전을 하였던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된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1의 (가)는 유턴차량이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우회전 중인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유턴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지만, 우회전 차량으로서도 반대방향의 도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사고 회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1의 (가)를 기초로 과실비율을 판단하였고, 청구차량이 도로가 아닌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유턴 사고(우회전 대 유턴) (B신호유턴) (기본과실)				참고기준 254-1 (나)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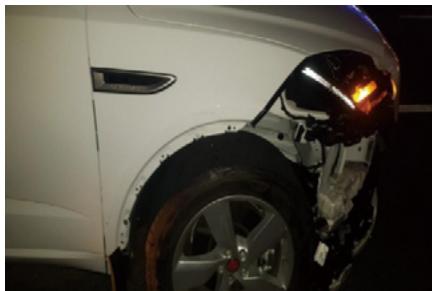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897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80 : 2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1(나)	<p>(나) 전방의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보다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우회전 차량인 A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B차량으로서도 유턴을 하는 중에 반대차선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80 : 2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 중 유턴신호에 유턴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우회전 후 일정거리를 주행한 상태에서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점, 피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등함</p>		<p>• 피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 중 대우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은 우측 차로(4차로)로 우회전을 해야 하나, 2차로까지 대우회전하여,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8-00000000
성명	□가해자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면동번호)
주소		
운전면허 번호: 제2층 보통	(면동번호:)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소유자:)	
발생일시 2018.11.30 18:35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사고위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내용 임파: 사용 0, 부상 0 명, 손상: 1129원이 우회전하다 신호에 맞아 충돌한 차량을 충돌한 교통사고입니다.		
사고개요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판단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진행방향 모습)

주요 쟁점

- 유턴신호에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우회전 중인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였던 점, 우회전하는 경우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를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254-1의 (나)는 전방의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은 우회전차량보다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유턴차량으로서도 유턴을 하는 중에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신호에 유턴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1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유턴 사고(우회전 대 유턴) (B신호유턴) (수정과실)				참고기준 254-1 (나)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758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크게 유턴하던 중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1(나)		<p>(나) 전방의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보다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우회전 차량인 A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B차량으로서도 유턴을 하는 중에 반대차선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80:2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80 : 2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유턴구간에서 정상신호에 유턴하던 중 피청 구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무리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 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유턴신호가 있는 유턴구간임)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조수석 앞부분, 피청구차량 운전석 뒷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우측 차로까지 크게 유턴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유턴신호에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우측 차로까지 크게 유턴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우측 차로까지 크게 유턴하여 피청구차량을 충격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 중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우측 차로까지 크게 유턴을 하였던 점, 동영상에 좌측 방향지시등 켜고 유턴하는 청구차량이 확인되는 점, 기타 접촉 부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1의 (나)는 전방의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은 우회전차량보다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유턴차량으로서도 유턴을 하는 중에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1의 (나)를 기초로 과실비율을 산정하였고, 청구차량이 다소 크게 유턴하여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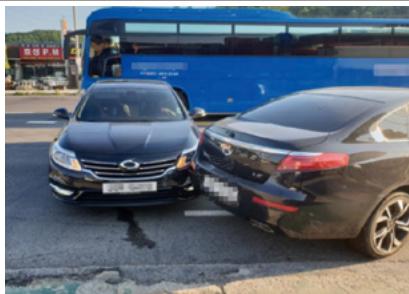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양 차량 유턴 사고 (B급유턴) (수정과실)				참고기준 254-2 (가)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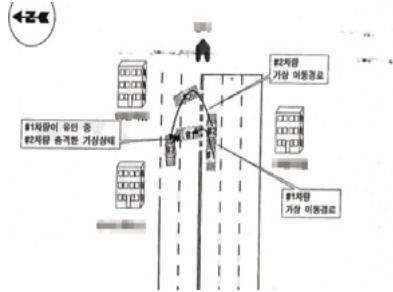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106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p>•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뒤에서 유턴을 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던 후행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54-2(가)	<p>(가) 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는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유턴하려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유턴구간에서 선행 유턴차량의 뒤를 따라 서행으로 유턴 중 선행 유턴하던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복귀하다가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동시 유턴 중 사고로, 선후행 관계를 고려하면 후행 청구 차량의 과실 70%, 선행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선행 유턴 중 후행 유턴하는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은 이미 선행하여 유턴하였고, 피청구차량의 접촉부위는 뒷범퍼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8-...호
성명	□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회화자	
주소	(전화번호: 010-...)	
운전면허	종별: 제1종 대형 면호: 13-	
사고처분	차종: 승용차 번호: 12345678 번호자: ...	
발생일시	2018.07.21 17:55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화재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내용	피해: 사망 0명, 부상 2명, 물손상: 100만 원 상당 ※ 1차손상: ... → 2차 손상: ...로 유턴을 강제하면서 진행 유턴은 2차상당 운전석 좁은 좁은 좌우로 유턴은 1차상당	
사고개요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 중인 모습)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정차 위치를 보면 청구차량의 급유턴 가능성성이 매우 높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약도에 양 차량의 유턴 중 사고로 확인됨

주요 쟁점

- 선행 차량이 유턴 중 후행하는 차량이 급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선행 피청구차량의 유턴 중 진로변경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을 하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급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선행하여 유턴을 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음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하면서 3차로까지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후행 청구차량이 짧게 급유턴을 하면서 2차로로 곧바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2의 (가)는 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는 선행차량으로서는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또는 후행상태에서 가로질러 유턴하려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선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후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을 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급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2의 (가)를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였고,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양 차량 유턴 사고 (동시유턴) (기본과실)				참고기준 254-2 (나)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831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선행 피청구차량과 후행 청구차량이 동시에 유턴하면서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2(나)			

(나)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

기본비율 A : B = 20 : 8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후행하면서 유턴 중 피청구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유턴 중 정차된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유턴 중 정차한 청구차량을 피청구차량이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정상 유턴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뒤를 따라 유턴하지 않고 추월하듯 유턴을 하여 먼저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후행 청구차량이 추월하듯 유턴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선행 피청구차량의 유턴과 동시에 유턴을 시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동시에 유턴 중 상대차량을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유턴 중 후방에서 동시에 유턴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부분, 피청구차량 운전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선/후행 차량 간의 동시유턴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동시에 유턴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의 동시 유턴 중 발생한 사고로, 후행하면서 동시에 유턴을 시도한 청구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점, 다만, 피청구차량도 뒤에서 유턴을 하다 정지하고 있던 청구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 과실 인정할 수 있는 점, 충돌 당시 청구차량이 정지하고 있었던 점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2의 (나)는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아 선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후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2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양 차량 유턴 사고 (동시유턴) (수정과실 준용)				참고기준 254-2 (나)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374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좌측의 가차로에서 서행으로 유턴 중 우측 차로에서 동시에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54-2(나)	<p>(나)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유턴대기 후 출발하려다 2차로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가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유턴을, 피청구차량은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유턴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정상 유턴장소가 아닌 곳에서 유턴한 청구차량의 과실은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가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양 차량의 동시 유턴 중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유턴한 차로의 모습)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양 차량이 동시 유턴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유턴차로가 아닌 가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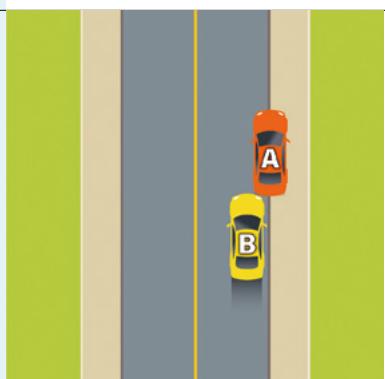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좌/우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양 차량이 동시에 유턴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유턴을 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음
- 청구차량은 유턴차로가 아닌 가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음

결정 이유

- 양 차량이 유턴 중 발생한 사고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유턴차로가 아닌 가차로로 보이는 곳에서 대기하였던 점, 청구차량 이전에 가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었고, 청구차량은 상당시간 동안 정차하고 있어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정차 및 유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2의 (나)는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아 선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후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가 아닌 좌우측 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양 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도표 254-2의 (나)를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검토하였고, 좌측에서 유턴을 하면서 정지한 청구차량은 정식 유턴차로가 아닌 가차로에서 유턴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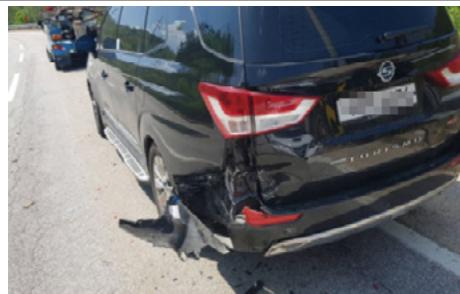
추돌 사고 (주·정차 중)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주·정차	 추돌차	참고기준 255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472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편도 2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5	 <p>추돌사고인 도표 253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 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 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흰색실선 구간에서 잠시 짐을 내리기 위해 정차 중 출음운전을 하였던 피청구차량에게 추돌당한 사고로, 사고 장소는 평소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로 항시 주정차가 가능한 넓은 대로이므로, 후미추돌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도 2차로의 커브길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청구차량을 피청구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추돌한 사고이기는 하나 커브구간에서 2차로의 대부분 차지하여 주정차한 청구차량의 과실 10% 가 타당함
---	---

입증 자료



- 동영상(정차 중인 청구차량의 후방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 차량의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후미 추돌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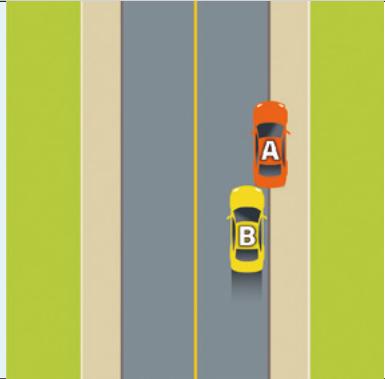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갓길에 정차된 청구차량을 피청구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흰색 실선구간에 정차하였고, 사고 시간은 주간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시야에 제한이 없었던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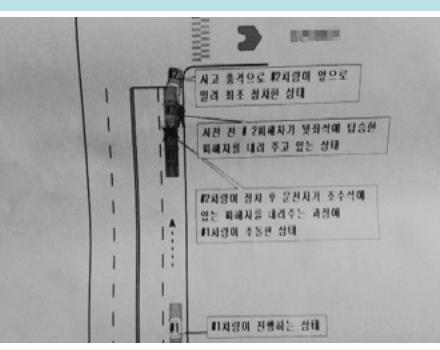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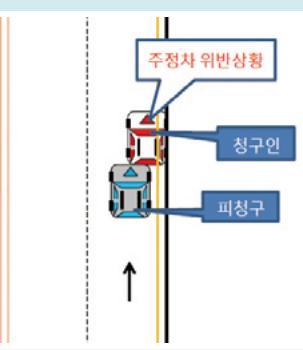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편도 2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흰색실선 구간에서 정차한 점, 피청구차량은 시야에 장애가 없는 주간임에도 감속 내지 제동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청구차량을 추돌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5는 선행 차량이 주행 중 발생한 추돌사고인 도표 253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주·정차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흰색실선 구간에서 정차하던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5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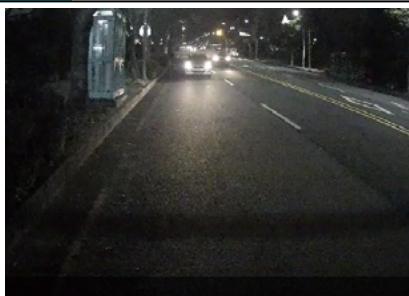
추돌 사고 (주·정차 중) (수정과실)					참고기준 255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2661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황색실선 구역에서 정차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후미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5	 <p>추돌사고인 도표 253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 정차 중인 청구차량을 피청구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 편도 2차선 도로의 황색점선 구간에서 청구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고, 뒷좌석에 있는 자녀를 내려주던 중 피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불법주정차 중인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주정차 금지구간에 불법정차 중이었고,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차량이 추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경찰서
성명		□ 차량주인동록번호	경2018-00000
주소		■ 운행자	
운전면허	증명	번호	(전화번호)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20180321	(소유자:)
발생일시 2018.03.21 19:50			
발생장소 경기도 화성시 흥국로 123 (화성시내로)			
사고유형 ■ 차대차 □ 차량단독 □ 차대사용 □ 기타			
사고본인 안전운전의무위반			
회피내용 안내: 차량 A는 차량 B를 발견해 멈춰 서 있다. 멈춰 서면서 차량 A는 차량 B를 피하기 위해 회피하던 동안 차량 A가 운전석에서 내려 와 차선에서 있는 차량 B를 낙하 주차위해 회피하고 있다. #2차장 뒤쪽의 부딪힘 #1차장 일정과 부딪히 충돌하였다.			
사고개요			



- 동영상(정차한 청구의 후방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의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후미추돌사고로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황색실선 구간에 청구차량이 정차함)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황색실선 구간에서 정차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정차한 청구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황색실선 구간에 정차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주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추돌사고로, 청구차량이 황색실선 구간에서 주정차 중이었던 점과 야간에 발생한 사고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5는 선행차량이 주행 중 발생한 추돌사고인 도표 253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주·정차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정차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55를 기초로 과실비율을 산정하였고, 청구차량이 황색실선 구간에서 정차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좌회전 대 우회전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56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185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6		<p>좌회전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통행우선권이 있고,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약도 미제출</p> <p>•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까지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파손부위가 조수석 뒷부분이고, 피청구차량의 대우회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우회전을 하고 있는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 모두 대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청구차량과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대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은 대우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의 사고로,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던 점, 양 차량 모두 대회전을 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6는 좌회전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통행우선권이 있고 우회전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이고, 양 차량 모두 대회전을 하였으므로, 도표 256의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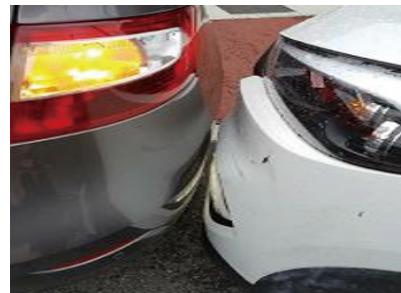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좌회전 대 우회전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56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621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6	<p>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통행우선권이 있고, 우회전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 끼어들어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정해진 차로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2차로로 대우회전을 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교차로 선진입하여 우회전 중이었으며,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무리한 주행으로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로 대우회전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접촉 부위)

주요 쟁점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대우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2차로로 대우회전을 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맞은편 도로에서 2차로로 대우회전하여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256는 좌회전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통행우선권이 있고 우회전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우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 이므로, 도표 256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대우회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정차 후 출발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57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809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도로의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7	<p>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 시도하는 B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중 출발 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A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우회전 또는 직진하여 추월을 시도한 B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80 : 2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불법 주차 후 갑자기 출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피청구인 차량이 도로의 우측에서 정차 해제 후 주행 중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p> <p>청구차량이 서행하며 도로의 주변상황을 잘 살펴 운행했어야 하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정차 중인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던 중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접촉 부위)

주요 쟁점

-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과 직진(우회전)하기 위해 추월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피청구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중 좌측에서 진행하던 청구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 사고인 점,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피청구차량을 추월 후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던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7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후 출발 할 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또는 우회전)위해 추월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우회전을 위해 피청구차량을 추월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 이므로, 도표 257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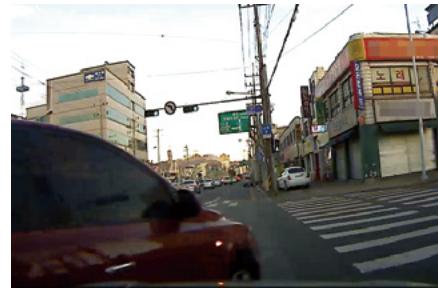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정차 후 출발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57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452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3차로의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7		<p>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 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중 출발 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A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우회전 또는 직진하여 주의의무를 시도한 B 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80 : 2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이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로, 교차로 부근의 우측에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우회전 중에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급출발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p>피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는 피청구차량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우회전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우측에 정차해 있는 피청구차량에 승객이 탑승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피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 모습이 확인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과 직진(우회전)하기 위해 추월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에 대한 청구차량의 예측 가능성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3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의 동영상에 사고 발생 전 피청구차량에 승객이 탑승하는 모습과 정차 후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됨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2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점,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승객이 피청구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곧 출발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7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후 출발할 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또는 우회전)위해 추월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다가 좌측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7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나)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B녹색 직진, 좌회전신호(선행)) (기본과실)				교차로 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좌회전(직진·좌회 전 노면표시차로)	참고기준 258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003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8(나)	<p>(나) A차량이 전방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B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피청구인차량, 후행으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청구인차량 선행으로 신호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p>	<p>피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p>

• 선행 청구차량이 직진과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 청구차량이 선행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이 노면의 지시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중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대좌회전 사고임

• 피청구차량의 대좌회전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선행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선행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하여 2차로의 청구 차량을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후행 직진하는 차량과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직진/좌회전 신호에 후행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 직진/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선행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점,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중 후방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피양하기 불가능한 점,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대좌회전이 아닌 직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258의 (나)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전방의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선행하여 좌회전 중 좌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8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교차로	직진(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좌회전(직진 노면 표시차로)

259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2128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9	<p>B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중인 A차량으로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B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정상 직진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정상 직진한 청구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피청구차량을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시도 중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선행상태에서 진로변경을 하였고, 양 차량의 충격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사실확인원</th> <th style="text-align: right;">고통사고 경수번호: [REDACTED]</th></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장</td><td style="width: 15%;">명</td><td style="width: 70%;">[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td></tr> <tr> <td>주</td><td>소</td><td>[REDACTED] 주민번호: [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td></tr> <tr> <td>사고처</td><td>장소:</td><td>번호: [REDACTED] (소유자: [REDACTED])</td></tr> <tr> <td>사고차량</td><td>차종: 승용차</td><td>번호: [REDACTED]</td></tr> <tr> <td>발생일자</td><td colspan="2">2018.12.26 19:00</td></tr> <tr> <td>발생장소</td><td colspan="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좌회전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회피사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td></tr> <tr> <td>사고유형</td><td colspan="2">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차로 충돌방법 위반 </td></tr> <tr> <td>고객내용</td><td colspan="2"> 칭호: 사장님 부호: 2 연령: 4.475.000 원 상당 <small>*1차로를 거친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할 때 2차로를 우회한 차량이 교차로를 우회한 차량을 맞았거나 2차로를 우회한 차량이 1차로를 거친 차량을 맞았거나 차량이 교차로를 우회한 차량과 2차로를 우회한 차량은 1차로를 거친 차량과 충돌한 차량으로 판정됩니다.</small> </td></tr> <tr> <td>사고내용</td><td colspan="2"></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통사고 경수번호: [REDACTED]	장	명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	주	소	[REDACTED] 주민번호: [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	사고처	장소:	번호: [REDACTED] (소유자: [REDACTED])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REDACTED]	발생일자	2018.12.26 19:00		발생장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좌회전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회피사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차로 충돌방법 위반		고객내용	칭호: 사장님 부호: 2 연령: 4.475.000 원 상당 <small>*1차로를 거친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할 때 2차로를 우회한 차량이 교차로를 우회한 차량을 맞았거나 2차로를 우회한 차량이 1차로를 거친 차량을 맞았거나 차량이 교차로를 우회한 차량과 2차로를 우회한 차량은 1차로를 거친 차량과 충돌한 차량으로 판정됩니다.</small>		사고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통사고 경수번호: [REDACTED]																													
장	명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																													
주	소	[REDACTED] 주민번호: [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																													
사고처	장소:	번호: [REDACTED] (소유자: [REDACTED])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REDACTED]																													
발생일자	2018.12.26 19:00																														
발생장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좌회전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회피사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차로 충돌방법 위반																														
고객내용	칭호: 사장님 부호: 2 연령: 4.475.000 원 상당 <small>*1차로를 거친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할 때 2차로를 우회한 차량이 교차로를 우회한 차량을 맞았거나 2차로를 우회한 차량이 1차로를 거친 차량을 맞았거나 차량이 교차로를 우회한 차량과 2차로를 우회한 차량은 1차로를 거친 차량과 충돌한 차량으로 판정됩니다.</small>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 피청구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는 모습)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고 기재됨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은 조수석 앞부분, 피청구차량은 운전석 뒷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차량이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중인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할 때 피청구차량의 노면지시 위반, 교차로 내 진로변경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며,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9는 직진이 표시된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노면표시 위반 등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차량으로서는 오른쪽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9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59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376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후행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9	<p>B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중인 A차량으로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B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서로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교차로의 신호가 변경되어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후행상태에서 서행 불이행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급진로변경한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교차로 내 급진로변경과 지시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서행으로 좌회전 하는 모습)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차량이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 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행 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중이었음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중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직진 노면표시 구간임에도 좌회전을 시도한 선행 청구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및 방향지시등 미작동의 과실이 중대하나, 후행 피청구차량도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청구차량의 교통흐름을 잘 살펴 최소한의 위험회피,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고발생 예전 또는 회피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259는 직진이 표시된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노면표시 위반 등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차량으로서는 오른쪽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9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